
개방형 직위 안내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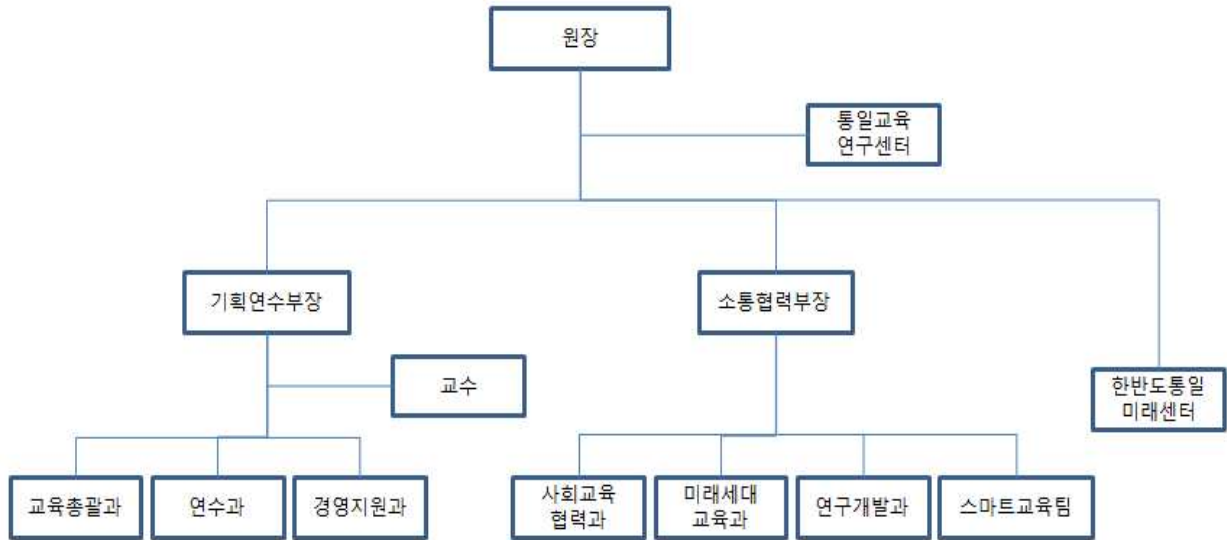
[국립통일교육원장]

2024. 1.

통 일 부

I. 기관 일반현황

□ 조직 및 정원 : 2부 6개과 1팀, 총 69명 * 책임운영기관



(23.12월 기준)

구분	고공단	교수	3급	4급	4.5급	5급	6·7급	8·9급	관리운영	합계
정원	3	9	1	6	2	18	35	10	1	85
현원	1	9	1	6	3	18	39	5	0	82

□ 예산 : 26,260백만원 (2024년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'24 예산(정부안)	
주요 사업	일반예산	①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.운영	5,015
		②학교통일교육 강화	4,412
		③사회통일교육 내실화	3,717
		④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	484
		⑤통일교육원 시설 운영	1,465
	기금	⑥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	3,942
소 계		19,035	
기관운영 기본경비	①인건비	5,691	
	②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	316	
	③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	1,218	
	소 계	7,225	
합 계		26,260	

□ 시 설

○ 국립통일교육원(서울 강북구 수유동)

- 부지면적 : 55,798m²(16,878평), 건물면적 : 6개동, 17,688m²(5,350평)

건물 (규모)	면적 m ² (평)	건물(규모)	면적 m ² (평)
본관 (5층)	4,892(1,480)	후생관 (5층)	1,804(546)
교육관 (5층)	4,832(1,461)	제2교육관 (3층)	1,914(579)
생활관 A동(7층)	3,066(927)	생활관 B동 (5층)	1,180(357)

○ 한반도통일미래센터(경기도 연천군)

- 부지면적 : 273,074m² (약 8만 3천평), 건축연면적 : 15,656m² (약 4,700평)

- 주요시설 : ▲통일미래체험관 ▲연수동 ▲생활관 ▲가족빌리지(펜션) ▲체육관
▲식당 ▲축구장 ▲농구장 ▲족구장 ▲한반도투어링장 ▲야영장
▲야외공연장 등

□ 소관법령 (관련법령 포함)

○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및 시행령

○ 「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」 및 시행규칙

○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
※ 2016.3.1.,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

○ 「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」 등

○ 「청소년기본법」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등

Ⅱ. 통일교육원장 주요 업무 내용

【 관련 근거 】

(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2조의10) 국립통일교육원은 「통일교육 지원법」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·사회 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(「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」 제7조)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통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·조정·실시 및 평가
2. 통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
3. 통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
4. 통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통일교육 연구 지원
5. 이러닝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
6. 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 운영계획 수립·집행 및 평가
7.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·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8.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·관리
9.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통일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
10. 통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 및 평가
11.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
12. 그 밖에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사무

1

대국민 통일교육 업무의 지도 총괄

- 통일교육 관련 주요 정책개발 및 업무계획 수립
 - ▲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▲통일교육 기본방향의 정립 ▲통일교육발전 방안 기획 ▲통일교육의 실태점검 및 평가 등
-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
-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

2

원내교육 및 이러닝 통일교육과정의 운영

- 원내 초청 통일교육 과정의 운영 및 평가
 - ▲원내 초청 교육과정(글로벌교육 및 이러닝 포함) 운영 ▲교육과정 평가 및 효과성 평가 ▲통일교육의 기획 및 수요 발굴
- 통일교육 역량 강화
 - ▲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▲교육기법 개발 및 교수역량 강화 ▲교육이수자 사후 관리 및 활동 지원

3

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지원

- 미래세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 지원
 - ▲학교통일교육 제도화 추진 ▲청소년 대상 참여·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▲통일교육 관련 교원·전문강사 역량 강화
- 대학사회 통일논의 확산
 - ▲대학 통일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 ▲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확대 ▲통일문제 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

4

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지원

-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
 - ▲통일교육위원 위촉 및 전문성 강화 ▲통일교육 민간단체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 지원
-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지원
 -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▲지역 통일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▲오두산 통일전망대 및 지역 통일관 운영 지원

5

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- 각급 학교 등 대상별 맞춤형 통일교육 교재·자료의 개발
 - ▲기본교재 및 참고자료 ▲대상별 눈높이 영상 자료 ▲방송용 및 뉴미디어, 에듀테크 활용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 등
- 새로운 통일교육 기법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- 통일교육 교재·자료에 대한 수요 조사 및 평가

6

판문점 견학 및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교육 운영 등

- 판문점 견학 운영 및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 관리
- 한반도통일미래센터(경기 연천 소재) 청소년 대상 체험연수 운영
- 기타 국립통일교육원 청사 등 관할 시설관리
- 통일부장관의 명에 따라 소관 사무 총괄 및 소속 공무원 지휘·감독

Ⅲ. 당면 현안 과제 (2024년)

□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교육 활성화

- 「2024년 통일교육 기본교재」 발간
 - 「통일교육 기본방향」, 「통일문제 이해」, 「북한 이해」 등
 - 「헌법」, 「통일교육지원법」에 근거한 교육 중점방향·내용 제시
- 건전한 안보관에 입각한 통일 체험교육 및 북한실상 알리기 교육
 - 분단 및 통일안보 현장 견학 프로그램 신설·운영(청소년, 일반)
 - * 권역별 견학현장을 발굴, 현장견학 중심 체험교육 추진
 - 북한 실상을 정확히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, 탈북민 전문강사 육성 및 학교·지역사회 통일교육 활동 강화

□ 지역사회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

- '24년 지역통일교육센터(10개 / 10개) 지정 등 재정비
 -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통일교육 서비스 제공
 - *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학 등 기관을 통일교육 센터로 지정 운영
- '24년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및 출범식 개최
 -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,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교육위원을 위촉
 - 지자체 및 지역 단체와의 협업 강화, 통일교육위원 활동 공간 마련 및 역량 강화 지원

- 자유·인권·통일 담론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통일교육 활동 지원
 - 공고(1~2월) → 선정(3월) → 집행관리(4~11월) → 평가(12월)
 -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민간 통일교육 효과성 제고
 -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통일관*을 통일 문화 체험공간으로 육성
 - 통일관 전시패널 일괄 교체(서울, 인천, 부산, 고성, 양구, 청주, 경남)
 - 통일관 개소별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전시의 질 향상 도
- * 제6조의4(통일관의 지정 등) ①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·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□ 학교통일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

-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
 - 「통일교육 주간」(5월) 운영을 통한 계기수업 정례화
 - 교육부, 시도 교육청 및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활용, 창의적 체험활동 중 통일교육 시수 확대 노력
- * ▲ 학교통일교육 지원협의회 ▲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
- 「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」(10~12월)를 매년 실시, 초중고생 및 대학생의 통일인식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모색
 - 2023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('23.2월)
 -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참여·체험형 프로그램 내실화
 - ▲ 만들기·토론 등 교내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(연중) ▲ 어린이·청소년 대상 문화행사(상·하반기) ▲ 어린이·중학생 기자단 운영
 - ▲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실시 ▲ 수업모델 개발·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연구학교 지정·운영

□ 대학의 통일논의 및 연구 활성화 지원

- 「통일교육 선도대학」 지정·육성사업 추진
 - '24년 신규로 5개교 지정 필요, 대학 통일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
 - 모니터링 및 컨설팅(상·하반기), 사업 중간점검(7월), 성과보고회 개최(12월) 등 선도대학 사업관리 및 지원 강화
-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추진

□ 국제사회 대상 통일교육 저변 확대

- 국제사회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통일교육 저변 확대
 - 헌법 제4조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
 - 해외 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(7월, 10~20명), 해외 한글학교 교사 등 재외동포 초청교육, 주요 협력국 대상 해외 순회교육 확대
- 글로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외 대학 한국학센터, 주요 국제교류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

□ 연천 「한반도 통일미래센터」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

- '24년 통일미래 체험관 콘텐츠 개선 용역 추진
 - ▲ '자유·민주·인권' 등 통일미래 비전 제시 ▲ 전시 컨테이너 등 게임형 체험 프로그램 구성 ▲ 북한실상 콘텐츠 등 보강
- ▲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▲ 통일광장 홍보패널 추가설치 등 외부환경 개선 ▲ 캐릭터 제작 및 무궁화동산 정비
 - 센터 개방을 통한 당일체험(자유관람) 운영, 방문수요 확대

/끝/